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4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3.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동물의 생명보호·복지증진은 지역별 생태·환경·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중)

개정안은 동물복지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법상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집행·조정·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동물 보호·복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음. 동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수의사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범정부 차원의 동물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복지위원회가 중앙정부 및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됨에 따라, 유기동물 관리, 동물보호시설 운영, 반려동물 문화 확산 등 동물복지정책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경험과 현장 여건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지역별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와 집행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지방자치법」 제182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을 실제로 집행·운

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경험과 정책 책임성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동물보호위원회에 위촉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